

제174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: 2023.8.24.(서면심의)

□ 안 건 명: 서울에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

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 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건물경사계, 균열측정계, 소음진동측정, EL BEAM SENSOR 등 주변 건물에 대한 계측 항목의 계측 측정 빈도가 공사완료 후 주 1회로 계획되어 있으나 계측관리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계측관리 기간을 명확히 명기하기 바람
- 평면도 범례의 계측기 수량과 평면도에 표기된 해당 계측기 기호의 수량이 일치되도록 조정 필요 (계측계획평면도 C-300)
 - 변형률 측정계 : 범례 6EA, 기호 3EA만 확인됨
- 지하수위계의 측정빈도가 1회/1일이상 되어 있어 자동화계측 검토 및 소음 진동계 등 민원관리를 위한 계측 항목일 경우 자동화계측 검토 바람.
- 1.4 과업개요 4) 계측 결과 및 분석 2) 계측결과 통보에 아래 내용 추가를 검토하시기 바람
 - “공사참여자 모두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관리한다”
(사유 : 계측결과 공유로 이상 변위시 신속한 대처 가능)

붙임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「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」 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건축시공	<p>1.과업내용서 I.1.4.3)계측관리 측정 및 분석</p> <p>(1)지중경사계,건물경사계,균열측정계,소음진동측정,EL beam sensor의 공사완료 후 계측측정 빈도가 주1회로만 표기되어 있으니 기간을 반영하여 주1회(1개월까지)로 명확히 명기 요망</p> <p>(2)지하수위계 설치후 측정빈도가 일 1회(1일간)인바 일 3회(1일간)이 아닌지 확인요망</p> <p>(3)지하수위계의 공사전행 중 계측 측정빈도가 1회/1일이상, 2회/주로 상이한 2개빈도가 있는바 어떤 경우에 각각의 빈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 요망</p> <p>2.계측도면(토목)</p> <p>(1)지하3층의 변형률 측정계가 9개로 수량표기 되어 있으나 도면상 표기된 수량을 세어보니 7개로 확인되는바 확인 요망</p> <p>(2) 계측도면 상에 표기된 변형률 측정계 숫자를 합산해보면 1층 7개+지하1층 8개+지하2층 10개+지하3층 9개(7또는 9개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도면상 명기 9개로 고려)+지하3층 하부 5개=39개로서 과업내용서상의 45개와 상이한바 적정한 것인지 확인요망</p>	
종합의견	(원안채택, <u>조건부채택</u> 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	

2023년 8월 8 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14.(월)까지 E-Mail(msr001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「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」 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측정시기 및 빈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기 필요 (계측계획평면도 C-30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공사진행중'이 흠막이/굴착 및 지하 변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인지,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어느 부분까지 진행하는 동안인지?- '공사완료 후'가 어느 공사까지 완료된 후부터 언제까지 측정해야 하는지?- 지하수위계의 경우, 설치후 '1회/일(1일간)'과 공사 진행중 '1회/일 이상, 2회/주' 등 측정빈도에 대한 내용 표현이 모호함- 진동소음측정, 구조물경사계에 대한 측정시기 및 빈도가 확인되지 않음 <p>2. 평면도 범례의 계측기 수량과 평면도에 표기된 해당 계측기 기호의 수량이 일치되도록 조정 필요 (계측계획평면도 C-30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변형률측정계: 범례 6EA, 기호 3EA만 확인됨 <p>3.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제출자료 형식을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계측 DATA가 수록된 CD 1매'를 '계측 DATA가 수록된 USB 등 전산저장장치 1EA'로 조정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8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14.(월)까지 E-Mail(msr001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「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과업내용서 제 I 장, 1.4의 3)계측관리 측정 및 분석 지하수위계의 측정빈도가 1회/1일이상 되어 있어 자동화 계측 검토바람. 소음 진동계 등 민원관리를 위한 계측 항목일 경우 자동화계측 검토바람.</p> <p>2.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의 설치위치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가 CIP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명확히 도시바람.</p> <p>3. 과업내용서 중 제 II 장, 2.1의 “1)계측기 설치전 주변 시설물에 대한 “인접 건물 사전조사(공사전, 공사중, 공사완료 후 구분조사) 실시”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조건 검토바람.(타사업 확인 필요)</p> <p>4. 본 계측용역은 계측수량이 총176개소로 상당히 많고 계측관리를 36개월간 장기간 수행하는 현장으로 지반조사 표준품셈(한국엔지니어링협회, 2017년)과 스마트 건설계측 표준품셈(산업통상자원부, 2021년)확인하여 대가산정 적정성 확인 바람.</p>	
종합의견	<p>조건부채택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8월 14 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14.(월)까지 E-Mail(msr001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「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」 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과업내용서 검토결과 과업개요, 과업내용 및 계측 설치수량, 관리 등의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.</p> <p>2. 과업내용 및 오기수정</p> <p>1) 1.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서울애니메이션 건립공사로 ~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→ 본 과업은 서울애니메이션 건립공사로 ~ 계측관리 및 계측 결과의 활용으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</p> <p>2) 1.4 과업개요</p> <p>3) 계측관리 측정 및 분석 건물경사계, 균열측정계, 소음진동측정, EL BEAM SENSOR 등 주변 건물에 대한 계측 항목의 계측 측정 빈도가 공사완료 후 주 1회로 계획되어 있으나 계측관리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계측관리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함. (상기4개 계측은 지하골조 완공 후 1개월까지로 명기되어 있음) (출처: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Manual)</p> <p>(별첨: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Manual)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11일

심의위원 :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「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	<p>1. 1.4 과업개요 3) 계측관리 측정 및 분석의 측정시기에 공사진행 중, 공사완료 후에 대한 정확한 공사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'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'을 참고하여 항목별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람</p> <p>2. 1.4 과업개요 4) 계측 결과 및 분석 2) 계측결과 통보에 아래 내용 추가를 검토하시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공사참여자 모두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관리한다” (사유 : 계측결과 공유로 이상 변위시 신속한 대처 가능) <p>3.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람</p> <p>4. 2.3 과업수행자의 구성 및 자격 기준 5) 아래 내용 수정하시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측기 설치 및 계측 분야별 ~ → 계측기 설치 및 측정 분야 ~ <p>5. 용어 현행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 →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○ 기술자 → 기술인 	

2023년 8월 일

심의위원 :